

# 1. 총원우회 회칙

##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베뢰아국제대학원대학교 총원우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의 회원은 본 대학의 학칙에 따라 민주적이고 능동적인 자치활동을 통하여 창조적 지도능력을 개발하고, 회원 상호간의 유대를 돈독히 함은 물론 건전한 학풍 조성 및 본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성별된 봉사자로서의 인격함양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치)** 본회는 베뢰아국제대학원대학교 안에 둔다.

**제4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목회학석사과정(M.Div) 및 목회연구과정, 신학석사과정(Th.M)의 재학생으로 한다.

**제5조(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항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회의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회칙을 준수하며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2. 본회의 회원은 본회를 발전, 향상시킬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6조(기구)**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학생총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집행부의 기구를 둔다.

### 제7조(학생지도위원회)

1. 본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학생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학생지도위원회를 둔다.
2. 학생지도위원회는 학생회의 활동지도와 재정운용에 대한 감사기능을 수행한다.

## 제2장 학생총회

**제8조(구성)** 본교 재학생으로 구성하되, 제1장 제4조의 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9조(권한)** 학생전체에 관련된 중대한 사항을 토의 결정한다.

**제10조(의장)** 학생총회의 의장은 총원우회 회장이 한다.

**제11조(소집)** 학생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둔다.

1. 정기총회는 개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총원우회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2. 임시총회는 회원 20인의 서면요청이나 대의원회의 결의, 혹은 총원우회 회장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3. 학생총회의 소집은 1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한해서는 예외로 한다.

**제12조(의결정족수)** 1. 정기총회는 위임을 포함한 과반수 참석으로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위임을 포함한 회원 4분의 1 이상의 참석으로 개최한다.
3. 의결정족수는 참석인원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 제3장 대의원회

**제13조(지위)** 대의원회는 본 회의 최고의결기구이다.

**제14조(구성)** 1. 대의원회는 학년별 직접선거로 선출하고 1인씩의 대표로 구성하되, 다만 30인 이상은 2인을 둘 수 있다.

2. 주, 야간을 통합하여 30인 이상일 경우는 야간반에 1인을 둔다.
3. 신학석사 과정은 10인 당 1명의 대의원을 선출한다. 단, 총 재적인원이 15명 이상일 경우 전공을 고려하여 2인을 둘 수 있다.
4. 목회연구과정은 10인 이상일 경우 1명의 대의원을 둔다.

**제15조(기구 및 선출)**

1. 대의원회는 의장을 선출하며 부의장, 회의록서기 각 1명씩을 둘 수 있다.
2. 의장은 대의원회의에서 출석대의원의 과반수출석과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16조(직무)**

1. 의장은 대의원의 회무를 총괄하며,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 유고시 그 직무를 수행하며, 서기는 회무의 기록, 보관 등을 수행한다.
2. 대의원은 학년 대표를 겸임할 수 있다.

**제17조(임기)** 대의원 및 의장의 임기는 3월 초부터 익년 2월 말까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학기별로 선출할 수 있다(학기는 3월 초~8월 말, 9월 초~익년 2월 말).

**제18조(업무 및 권한)** 대의원회의 업무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회칙개정 의 발의 및 의결
2. 학생총회의 소집요구권
3. 학생회비의 책정
4.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의 심의 및 승인권

5. 예산, 결산의 심의 및 승인권
6. 대의원회의 의장선출권
7. 총원우회 회장, 부회장(2인)의 불신임 발의권
8.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의 심의 및 의결
9. 집행부 각 부장의 해임요구권
10. 집행부에 대한 회계감사권
11. 학교 당국 관계자, 총원우회 회장 및 집행부의 각 부장의 출석요구권
12. 학교당국의 부당한 행정에 대한 시정권
13. 기타 필요한 사항

**제19조(소집)** 대의원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1. 정기총회의 회의는 매 학기에 의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와 재적 대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3. 대의원회의 소집은 5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단, 의장이 필요로 소집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0조(의결정족수)** 제18조 1항, 6항, 7항은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외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4장 원우회 회장 및 부회장

**제21조(직위)**

1. 총원우회 회장은 총원우회를 대표하며 운영위원회와 집행부의 의장이 된다.
2. 총원우회 부회장(2인: 목회학과 1인, 목회연구과정 1인)은 총원우회장을 보좌하며 총원우회장 궐위 시 그 직을 대행한다(신학과 부회장, 목회연구과정 부회장순으로 한다).

**제22조(임기)** 총원우회 회장, 부회장(2인)의 임기는 당해연도 7월 초부터 익년 6월말까지 1년으로 하며, 3학기 이상을 등록하고 재학하고 있는 자로 한다.

**제23조(업무 및 권한)**

1. 총원우회 회장은 운영위원회, 집행부회의를 소집하며 그업무를 주관한다.
2. 총원우회의 전체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및 결산을 편성하여 임기학기 개강후 30일 전까지 대의원회에 제출한다.
3. 대의원회에서 의결된 사항 중 총원우회 회장의 직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집행한다.
4. 기타 총원우회 회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집행한다.
5. 집행부를 구성하는 각 부원을 해임하고 새로 임명할 수 있다.
6. 본교 평의원회의 평의원 자격이 되나, 필요시 책임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제24조(신분보장)** 총·부원우회장은 탄핵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이유로도 그 직위에서 해임되지 아니한다.

## 제5장 운영위원회

**제25조(지위)**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최고 운영기구이며, 제21조 1항에 근거해 총원우회 회장이 위원장이 된다.

**제26조(구성)** 운영위원회는 총원우회 회장, 부회장(2인), 총무로 구성된다.

**제27조(업무 및 권한)** 1. 회비를 책정하여 대의원회에 상정한다.

2. 학생총회의 제반사업 및 전체 예산을 검토, 조정, 심의하여 대의원회에 상정한다.

3. 결산 보고서를 검토하여 대의원회와 지도위원회에 제출한다.

4. 대의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5. 집행부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 심의, 조정한다.

6. 회칙 개정안을 발의하여 대의원회에 상정하여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학생총회에 의결한다.

7. 제23조 3항의 동의권을 가진다.

8. 대의원 총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사항을 의결한다.

9. 집행부 각 부장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10. 규정 외 특별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업무를 처리한다.

**제28조(소집)** 운영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1. 정기회의는 매주 1회 가지며, 시간과 횟수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임시회의는 위원장의 요구나, 위원 중 2인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29조(의결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참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장 집행부

**제30조(지위)** 집행부는 본 회의 최고 집행기구이다.

**제31조(구성)** 1. 총원우회 회장, 부회장(2인), 총무, 서기, 회계, 각부 부장으로 구성한다.

2. 각부 부장은 업무진행을 위해 차장을 둘 수 있다.

3. 총원우회 회장은 총무, 회계, 서기 및 각 부장과 차장을 임명하되 부회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할 수 있다.

4. 총무, 서기, 회계는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 단, 부장 및 차장은 가능하나 의장과 부의

장으로 선출될 수 없다.

**제32조(업무 및 권한)** 집행부는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가진다.

1. 대의원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을 집행한다.
2. 각 부서의 사업보고 계획서와 결산 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3. 집행부는 제반활동의 집행을 위해 산하에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두되, 필요에 따라 각 부서를 통합 및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① 총무
- ② 서기
- ③ 회계
- ④ 홍보부
- ⑤ 예배부
- ⑥ 학술부
- ⑦ 컴퓨터부
- ⑧ 교회개혁지원부
- ⑨ 해외선교부
- ⑩ 친교부
- ⑪ 성경통독부
- ⑫ 설교부
- ⑬ 축사부
- ⑭ 기도부

## 제7장 재정

**제33조(재원)** 본 회의 재원은 학생회비와 특별회비, 헌금, 찬조금, 보조금, 기타로 총당한다.

**제34조(자치회비)** 본회의 자치회비는 매 학기 등록금의 2~4%의 소정금액으로 하며 그 인출 및 집행은 총원우회 회장의 결재에 의한다.

**제35조(회계연도)** 1. 본 회의 회계연도는 해당년도 7월 초부터 익년 6월 말까지로 한다.  
2. 전항의 회계연도는 2기로 나누되 각기마다 예산과 결산을 행한다.

**제36조(예산편성 및 심의)** 1. 예산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하여 대의원회가 최종심의 확정한다.

2. 집행부는 대의원회 소집 15일 전에 예산을 공고한 후 대의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3. 1,2항을 제안 받은 대의원회는 5일 이내에 심의, 확정해야 한다.

**제37조(예산집행)** 대의원회에서 의결된 사업집행을 위한 활동에 사용한다.

**제38조(가예산 및 경정예산)** 1. 예산안이, 학생회칙이 정한 기간 내에 대의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1개월간의 가예산을 인정할 수 있다.

2. 예산 수립 후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통과된 예산에 가감할 필요가 있을 때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대의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9조(예산관리 및 지출)** 학생회비의 징수 및 관리는 학교가 담당하고 인출 및 집행은 본 회 해당기구에서 요청 시 총원우회장이 학교 당국을 경유하여, 총원우회 회장의 결재와 확인에 의해서 집행한다.

**제40조(결산보고)** 1. 운영위원회는 결산 보고서를 매 학기 작성하여 대의원회와 학생지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2. 대의원회는 결산보고 내용을 공포할 수 있다.

**제41조(감사)** 예산의 실행은 매 학기 대의원회와 학생지도위원회에서 감사를 받는다.

## 제8장 선거

**제42조(선거방법)** 본 회의 선거는 보통, 직접, 비밀, 평등선거로 한다.

**제43조(선거시기)** 총원우회 회장, 부회장(2인: 신학과 1인, 목회연구과 1인)의 선거는 임기 만료 30일 이전에 실시한다.

**제44조(임기)** 1. 총원우회 회장과 부회장(2인), 집행부원의 임기는 당해연도 7월 초부터 익년 6월 말까지로 한다.

2. 대의원 의장, 대의원, 학년대표 임기는 3월 초부터 익년 2월 말까지로 한다.

**제45조(총원우회 회장과 부회장(2인) 구성 및 선거)**

1. 총원우회 회장, 부회장(2인) 입후보자는 3인1조가 되어 참여한다.

2. 재적 회원의 과반수 투표참여와 과반수 득표자로 결정한다. 해당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다 득표자와 차점자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실시하여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3. 부회장 1인은 목회연구과 재학생이어야 하나, 후보가 없을 경우 M.Div 야간반에서 선출할 수 있다.

**제46조(학년대표 및 반대표)** 1. 학년대표 또는 반대표(M.Div 주·야)는 학년 및 반에서 직접 선거로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3분의 2 이상 득표로 한다.

2. 목회신학과는 주, 야 반대표로 선출하되, 학년대표는 주간반대표가 맡는다.

3. 선거는 첫 학기 시작 2주 내에 하며, 유고시 유고로부터 2주 내에 선출한다.

**제47조(의장 및 대의원)** 1. 대의원 선출은 학년에서 직접선거로 학년(단, 목회신학과 주간회

원)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3분의 2 이상 득표로 한다(학년대표 겸직 가능).

2. 대의원 선거는 학기 시작 2주 내에 선출하며, 대의원 유고시 유고로부터 2주내에 선출한다.

3. 대의원 의장은 대의원 선출 된 후 2주 내에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4. 대의원회 의장은 대의원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3분의 2 이상 득표로 한다. 단,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에서 최다득표자로 한다.

**제48조(선거관리위원회)** 1. 당해연도 대의원의장이 선거관리위원장이 되어 대의원으로 선거위원회를 구성한다.

2.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나 선거비용을 총원우회를 통해 집행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종료 후 자동으로 해체한다.

**제49조(보궐선거)** 1. 총원우회 회장의 궐위 시 그 잔임 기간이 150일 이상일 경우에 궐위일시로부터 15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단 잔임 기간이 150일 이내일 경우에는 총원우회 부회장1인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목회신학과 부회장, 목회연구과 부회장 순으로 한다).

2. 부회장 유고시 대의원회의 복수 추천을 받아 총원우회장이 임명한다.

3. 대의원 의장의 유고시 부의장이 의장 권한을 대행하며 부의장이 공석일 경우 상위 학년 대의원 순으로 의장 권한을 대행한다.

3. 총원우회 회장 및 부회장(2인)이 불신임으로 인해 유고일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제50조(선거시행세칙)** 기타 선거절차 및 선거사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 제9장 회칙개정

**제51조(발의)** 회칙 개정안 발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대의원총회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을 때
2. 운영위원회의 발의가 있을 때
3. 회원 20% 이상의 발의가 있을 때

**제52조(의결)** 1. 발의된 회칙 개정안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검토를 거쳐 동의서를 첨부하여 대의원회에 회부하여 의결한다.

2.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학생총회로 의결할 수 있다.

## 제10장 협의체

**제53조(구성)** 1. 본교 총원우회의 협의체는 본 회를 포함한 목회신학원, 전문과정(학점은행제)으로 구성으로 한다.

2. 총원우회장은 본 협의체의 의장이 된다.

**제54조(행사)** 본교 행사는 총원우회(M.Div, Th.M, 목회연구과정), 목회신학원, 전문과정이 서로 협동한다.

**제55조(운영)** 총원우회장은 본교 행사를 위해서 협의체 소속 학생회의 임원을 소집하며 모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6조(비용)** 총원우회장은 본 행사에 사용되는 비용은 협의체 과정의 학생회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타 기관에서 후원을 받는다.

## 제11장 산하 상설기구

### 제1절 학회

**제57조(학회의 목적과 종류)** 1. 본회는 제1장 2조의 목적을 구현하기 위하여 각 신학 분야별 학회를 다음과 같이 구상하며 그 발전을 도모한다.

① 구약학회 ② 신약학회 ③ 조직신학학회 ④ 목회학회 ⑤ 교회성장학회 ⑥ 선교학회 ⑦ 기독교 상담학회

2. 학회 구성과 개폐에 관한 사항은 총원우회 회장이 결정한다.

**제58조(학회의 회원)** 전 재학생이 관심 분야별로 자율적으로 1개 학회에 가입한다.

**제59조(학회의 경비)** 1. 소요경비는 회원의 부담금과 학교 및 각 연구소의 지원금, 총동문회의 보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2. 학회에 대한 총원우회의 보조금은 회비의 15%에 한하되, 회비 이외의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0조(학회의 독자적 조직활동)** 각 학회는 본 회칙과 상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독자적인 조직과 규약을 가지며 고유한 활동을 수행한다.

**제61조(학회의 임원)** 1. 학회장 1인과 각 학회별로 지도교수 1인씩을 둔다.

2. 임원선출은 본 회의 최고 학년 중에서 추천으로 하되, 추천은 학회 임원들의 동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하도록 한다.

### 제2절 장학위원회



**제62조(설치)** 본 회에 장학위원회를 둔다.

**제63조(구성)** 장학위원회는 총원우회장 및 부회장(2인)과 대의원회 의장으로 구성한다.

**제64조(임무)** 1. 장학위원회는 장학금 수여 대상자를 추천하여 학교의 장학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다.

2. 장학위원회는 본회에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자체 장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제65조(의장)** 장학위원회의 의장은 총원우회장이 된다.

**제66조(소집)** 본 위원회는 매 학기말에 의장이 소집한다.

**제67조(감사)** 본 위원회의 결산은 대의원회와 학생지도위원회에서 감사한다.

### 제3절 졸업준비위원회

**제68조(설치)** 본회에 졸업준비위원회를 둔다.

**제69조(구성)** 1. 졸업준비위원회는 졸업예정 학년의 주·야간 학년대표와 졸업예정대의원들로 구성한다.

2. 목회신학원과 전문과정이 연합하여 졸업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

**제70조(구성)** 1. 졸업준비위원회는 졸업준비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추진한다.

2. 졸업여행은 학교와 총원우회가 긴밀하게 협조하여 준비 및 진행한다.

3. 졸업사진촬영 및 앨범제작, 그리고 사은회에 필요한 경비를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 따로 각출하여 집행한다.

4. 총원우회비에서 필요시 경비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다.

5. 준비위원회는 졸업비에 대해 졸업 전 3학기부터 부분납부를 요구할 수 있다.

**제71조(의장)** 졸업준비위원회의 의장은 대의원회 의장을 겸할 수 있다.

**제72조(소집)** 본 위원회 의장은 졸업 예정자의 모임을 소집할 수 있다.

**제73조(감사)** 본 위원회의 결산 감사는 대의원회과 학생지도위원회에서 한다.

### 부 칙

**제1조(공포)** 본 회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선거권)** 1. 총원우회장, 부회장(2인: 신학과 1인, 목회연구과정 1인) 출마 할 수 있는 피선거권은

① 목회학석사 3학기 등록을 필한 회원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전(全)학기 학업성적이 B 이상 되는 회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회 회원 20인 이상의 연서를 받은 자. 단, 복수추천은 인정하지 않는다.

2. 부칙 2조 1항 외에 회칙에 따라 선출, 선발(임명)되는 임원은

① 대의원회는 해당학기 등록을 필한 회원으로 품행이 단정하고 성적이 우수한 회원

② 집행부 부원은 해당학기 등록을 필한 회원으로 품행이 단정하고 성적이 우수한 회원

3. 학사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회원

**제3조(경조)** 상조회를 둔다.

① 경조대상자는 본 회원을 비롯한 교수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와 자녀로 애경사시 규정에 따라 소정의 상조금을 지급한다.

② 협의체의 목신, 전문과정 회장과 부회장은 본 회원과 동일하게 지급하되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급한다.

③ 상조금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4조(규정에 대한 해석)** 본 규정 외에 기타 사항은 만국통상례를 따르되, 해석이 필요할 경우 학생지도위원회의 지도를 따른다.

학생회칙 개정근거: 제12조 1항과 3항에 근거한다.

개정일: 2007년 3월 6일

개정선포: 3월 13일